



朝鮮科宦譜

李 弼 龍

<古書整理官>

南滙元 等編. 木活字本. 南原 養士齋, 1918.
8卷 8冊. 四周單邊, 半郭 25×17.8cm. 有界,
半葉 10行 20字, 註雙行, 上下黑魚尾, 32×
20.4cm. 線裝.

序: 著雍敦牂(戊午, 1918)…大邱徐丙贊序.

刊記: 大正七年(1918)四月二日發行, 全北南
原郡南原面養士齋發行.

1. 本書의 特徵

本書는 우리나라가 高麗朝에서 朝鮮朝에 이르는 동안 取才手段의 하나로 舉行했던 文·武科 또는 蔭仕를 통해 選拔 輩出시킨 各 姓氏別 科宦現況을 一目瞭然하게 看破할 수 있도록 한 데 集大成시킨 系譜類의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本書는 全體의 體裁가 一般書와는 달리 우선 우리나라 各 姓氏들을 本貫과 함께 多數順에서 少數順으로 各 列舉시킨 후 이들 姓氏順에 따라 다시 이를 文科篇·武科篇·蔭仕篇으로 各 分類하고 이어 各 篇마다 對象

의 人物 밑에 歷官 및 相互關係를 간략하게 註記함으로써 어느 姓氏를 莫論하고 各기 門閥의 隆盛과 歷官의 顯達與否를 參考하는데 매우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本書의 紹介를 契機로 하여 우리나라 各 姓氏別 科宦關係書의 所藏現況을 살펴보면, 本書 이외 異書名으로 ‘世家譜略’이니, ‘三班世譜’니, ‘簪纓世譜’니, ‘靑襟世譜’니, ‘縉紳譜’니, ‘文武譜’니, ‘蔭譜’니 하여 우리나라 유명도서관에 많이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도 人物의 收錄範圍나 內容의 記載事項이 本書만큼 昭詳하지 못하다.

그리고 本書는 科宦關係의 記錄 이외에도 上古時代 檀君에서 近世朝鮮에 이르는 歷代王國의 國系와 朝鮮朝때 制定 施行했던 官制가 卷初에 함께 收錄되어 있어 우리나라 歷代國系의 大統과 朝鮮時代 內·外職 各官의 位置 및 品階의 次第 등을 굳이 번거롭게 他資料를 涉獵하지 않고서도 쉽게 考證이 可能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곧 本書만이 지니고 있는 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序文에 의하면, 奎章閣直閣 徐丙贊은 本書의 編刊에 대한 前後의 事情을 다음과 같이

至我朝數百祀 治教休明 官職之制 粲然始備
有譜有案 保護民族之一大義…民散籍泯 亦幾
於羅·麗以前乎 於是乎數三君子 博採廣輯 述
此篇

이라고 하여 조선조가 수백년이 지나도록 治教
가 아름답게 밝아지고 官職의 制度가 粲然하게
갖추어져서 官譜도 있고 官案도 있는 것은, 우
리나라 民族을 保護하는데 하나의 큰 意義가
있다 하겠으며, 특히 新羅·高麗 이전처럼 民
族이 離散되거나 國籍이 泯滅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편집요원 두세 사람이 關係資料를 드넓
게 採取하고 蒐集하여 이 冊子를 만들었다고
述懷한 만큼, 本書가 지닌 編刊의 意義 또한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本書는 조선조 후기의 地方木活字本으로서,
1918년 전라북도 南原의 養士齋에서 刊行되었
는데, 卷末의 有司錄에 의하면 本書의 編者가
前參奉 南滄元 등 38인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는 前職의 參判·承旨·監察·主事 각 1명
과 參奉 4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本書의 編
輯陣이 莫強하였음을 誇示하고 있다. 本書는
국회도서관 소장본을 臺本으로 한 것이다.

2. 內 容

本書는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각
姓氏別 科宦譜에다 歷代王國의 國系 및 官制를
함께 編入시킨 惟一한 系譜學叢覽書인 만큼,

內容記事가 多様하지는 않다. 이는 總 8卷 8冊
으로 卷1, 歷代國系·朝鮮官制. 卷2~8, 姓氏別
科宦現況 등으로 構成되었는데, 이를 다시 各
部門別로 紹介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歷代國系

歷代國系에는 우리나라 上古의 國祖인 檀
君朝鮮을 비롯하여 箕子朝鮮·馬韓(附辰韓·
弁韓·衛滿朝鮮)·新羅(附高句麗·百濟·駕洛
國·列國)·高麗·朝鮮에 이르기까지 歷代王國
의 國名과 國王의 世代數 在位年 및 享壽가 수
록되었고, 이어 歷代王國의 國都所在地·沿革
과 歷代國王의 姓·名 또는 諱·字·號·陵號
및 陵所在地·相互關係 등이 간략하게 註記되
었다.

여기에서 다시 이들 歷代國王의 繼承世代數
와 在位歷年을 살펴보면, 檀君朝鮮은 世代數
2세에 歷年이 1211년이고, 箕子朝鮮은 世代數
가 42세에 歷年이 920년이다. 馬韓은 世代數가
8세에 歷年이 203년이고, 辰韓은 世代數가 7세
로서 新羅始祖王에게 滅亡되어 歷年이 共히
137년이며, 弁韓은 世代數가 역시 7세로서 新
羅에게 항복하여 共히 151년이고, 衛滿朝鮮은
右渠王때 高句麗에게 併合되어 世代數가 3세로
서 歷年이 共히 87년이다.

이어 新羅는 始祖王인 赫居世로부터 敬順王
에 이르기까지 世代數가 55세로서 歷年이 共
히 992년이고, 高句麗는 東明王에서 寶藏王에
이르기까지 世代數가 28세에 歷年이 705년이
며, 百濟는 溫祚王에서 義慈王에 이르기까지

世代數가 30세에 歷年이 678년이고, 駕洛國은 首露王에서 讓王에 이르기까지 世代數가 10세에 歷年이 491년이다. 따라서 列國은 耽羅國에서 後百濟國에 이르기까지 總 27國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各國은 高句麗·百濟·新羅 등에 의해 각각 降伏·合併 또는 滅亡되었다.

다시 이어 高麗는 太祖神聖王에서 恭讓王에 이르기까지 世代數가 僞王을 포함하여 總 34世로서 歷年이 共히 475년이다. 끝으로 朝鮮은 國王의 世系가 太祖康獻高皇帝에서 李太王(高宗)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첫머리에 朝鮮國의 璿系를 비롯하여 太祖 이상의 4代追尊의 各王稱號와 高麗의 이상처럼 當朝의 世代數를 밝히지 않은 대신 各王마다의 歷年·春秋·生男數(公主 제외)·陵號 및 陵所在地 등을 明記하였고, 또한 各王稱號에 따른 “名”字 대신에 “諱”字를 놓아 보다 慎重性을 期하였다.

② 朝鮮官制

朝鮮朝때 制定 施行한 것으로, 여기에는 첫머리에 吏典의 小題를 두어 大殿·世子兩宮의 內命婦와 外命婦에 대한 職官 및 封爵의 稱號가 品數別로 明記되었는데, 大殿宮 內命婦의 各種 職官은 正·從 1品에서 9品에 이르는 반면 世子宮 內命婦의 各種 職官은 從2品에서 9品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서 封爵은 夫君의 職官에 따른 것으로 庶孽의 所生이거나 再嫁한 자는 除外되고 改嫁한 자는 追奪하도록 되어 있다.

이어 朝鮮時代 各 官廳別 職官들의 品階를 東·西班(內·外職)으로 兩分하여 東班官階에서는 正·從의 各 1品에서 9品에 이르는 各 職官別 品階의 現況과 歷代耆老所의 入所規例 등을 첫 머리에 列舉한 후 正1品에서 5品에, 從1品에서 6品에 이르는 各 官廳의 名稱과 各 官廳의 所管業務, 職官名, 品階別 定員數, 各 道別 外官職의 現況 등이 수록되었고 附記로 各 職官의 品階別 加資·贈職·追贈·贈諡·賜諡 등의 規例가 追加되었다.

西班官階에서는 역시 正·從의 各 1品에서 9品에 이르는 各 職官別 品階의 現況을 첫머리에 列舉한 후 正1品에서 5品까지와 從6品の 各 官廳別 名稱 및 所管業務, 職官名, 品階別 定員數, 軍營·散職 및 各 道別 外官職의 現況 등이 수록되었는데, 西班의 官階는 東班의 官階에 비해 規模가 적을 뿐만 아니라 各 職官別 品階도 낮게 調整되었다.

다음으로 禮典의 小題下에 科規·生徒·璽寶·朝儀 등의 記事가 차례로 列舉되었는데, 이들 記事중 主要部分을 간추려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科規：科擧의 應試資格은 大科의 경우, 通訓 또는 生員·進士·通德 이하의 身分으로 指定하여 3년마다 한 차례씩 文·武科에 응시토록 하되, 어떤 罪를 犯했을 때에는 비록 科擧에 合格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원히 叙用되지 못하며 賊吏의 아들이거나 再嫁婦 또는 庶孽의 자손에게는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陰陽科의 天文學에 대하여는 本學科의 出身이 아니면 응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科擧應試에 따른 違法措處의 事例에
는, 中外 大·小科場에서의 借試 또는 代試를
敢行한 者거나, 應試對象名에 登載되지 않은
者거나, 試驗紙를 바꿔치기하는 者거나, 混亂을
일으켜 科試場을 罷場시키는 者는 生員·進士
일 경우 邊方의 먼 곳으로 充軍시키고, 幼學·
良人일 경우 水軍으로 充員시키며 公·私賤일
경우 絶島로 귀양보내 奴僕을 삼는다.

科擧의 種類에는 式年文科初試·覆試·殿試를
비롯하여 式年生員初試·覆試, 式年進士初試·覆
試, 增廣文武初試·覆試·殿試, 別試文科初試·殿
試, 庭試文科, 謁聖文科, 春塘臺文科, 文科重試,
文臣庭試, 節日製, 黃柑製, 四學合製, 外方別科,
譯科初試·覆試, 醫科初試·覆試, 陰陽科初試·覆
試, 律科初試·覆試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應
試의 答案文중 式年文科初試·覆試에서는 初場
에 四書疑義·論 각 1편을, 中場에 賦 및 表·箋
중 각 1편을, 終場에 對策 1편을 製述하고 殿試
에서는 對策·表·箋·箴·頌·制·詔중 1편만
을 製述한다.

이어 式年生員初試·覆試에서는 五經義·
四書疑 각 1편을, 式年進士初試·覆試에서는
賦·古詩 각 1편을 製述하고 增廣文科初試는
製述이 式年文科初試와 똑같다. 그러나 增廣
文科覆試·殿試에서는 初場에 賦 및 表·箋
중 각 1편을, 終場에 對策 1편을 製述하고
別試文科初試에서는 初場에 論 및 表·箋중
각 1편과 賦 1편을, 終場에 對策 1편을 製述
한다. 그러나 別試文科殿試와 謁聖文科·春
塘臺文科·文科重試·文臣庭試·節日製·黃
柑製·外方別科 등은 製述이 增廣文科覆試와

똑같다.

끝으로 陰陽科初試는 天文學·地理學·命課
學으로 分類되는데, 天文學에서는 ‘步天歌’·‘經
國大典’·‘天文曆法’·‘時憲紀要’ 등을, 地理學에
서는 ‘靑鳥經’·‘錦囊經’·‘明山論’·‘洞林’·‘照
膽’·‘經國大典’·‘琢玉斧’ 등을, 命課學에서는
‘應天歌’·‘範圍數’·‘經國大典’·‘時用通書’·‘協
吉通義’ 등을 각각 背誦한다.

生徒：分野別 各界 學業에 종사하는 학생을 말
한 것으로, 여기에는 成均館을 비롯하여 總 18個
所에 이르기까지 儒學·漢學·蒙學·女眞學·倭
學·文學·地理學·命課學·律學·畫學·醫學
등의 生徒數가 記錄되었다.

璽寶：임금이 쓰던 印章을 말한 것으로, 여
기에는 事大文書에 쓰던 御寶有大寶, 敕命·敕
書·敕旨에 쓰던 施命之寶, 通信文書에 쓰던
以德寶, 諭書에 쓰던 諭書之寶, 書籍을 頒布
할 때 쓰던 宣賜之記, 宣貺端輔, 同文之寶,
御製·殿識에 쓰던 奎章之寶, 閣臣들의 敕旨
에 쓰던 濬哲之寶 등이 차례로 수록되었는
데, 이중 宣貺端輔, 同文之寶는 쓰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는 大內에 있다고 記錄하고
있다.

朝儀：朝廷에서 거행하던 儀式을 가리킨 것
으로, 여기에는 正朝·冬至·聖節(임금의 誕
日)·端午 등의 명절을 축하하는 百官의 朝賀,
每月의 朔望때 百官의 朝參, 正朝·冬至·聖節
때 外官의 拜箋陳賀와 奉朝賀·耆老所堂上官의
常服肅拜, 文·武官중 9品 또는 4品 이상 受職
者의 謝恩肅拜, 文·武科 또는 生員·進士 合
格者의 詣闕謝恩, 其他 稱賀 등의 儀式事例가

간략하게 수록되었다.

③ 朝鮮朝의 科宦譜와 姓氏一覽

앞서言及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各 姓氏 및 各 姓氏別 著名人物 등을 多數順에서 少數順에 의해 첫머리에 列舉한 후 이들 姓氏順에 따라 다시 文科篇·武科篇·蔭仕篇 등 세 가지로 分類하고 이어 各 姓氏別 人物 밑에 職官名·相互關係와 各 姓氏別로 文廟配享·相臣·正卿·文衡·湖堂·清白吏·孝旌·國舅·駙馬·將臣·遺逸·文章·名筆·殉國·殉節 등 著名한 人物들의 數ぞ를 함께 간략하게 註記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朝鮮時代의 各 姓氏와 本貫의 數ぞ가 卷2에서 卷8에 이르기까지 總 106姓 666貫(未考의 姓·貫은 除外)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중에는 各 姓氏別로 未考의 姓·貫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들 姓氏중에는 李氏와 金氏가 각각 91貫으로서 그 수효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3貫을 지닌 朴氏를 들 수가 있어 옛부터 全國에 分布된 姓氏중 가장 많고 흔한 姓氏를 가리켜 李·金·朴 3姓이라고 칭하였음이 偶話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 本書에 수록된 朝鮮時代의 姓氏別 本貫別 全 姓·貫의 一覽을 參考삼아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李氏(全州·延安·慶州·廣州·韓山·德水·全義·驪州·咸平·牛峯·龍仁·眞寶·富平·陽城·青海·永川·載寧·固城·星州·咸安·

陝川·羽溪·原州·光山·碧珍·禮安·興陽·公州·新平·安山·安城·安岳·寧川·金溝·鳳山·洪州·杆城·積城·遂安·平昌·德山·長水·古阜·丹陽·忠州·平山·河濱·尙州·江華·金陵·開城·益山·清州·寧海·泰安·報恩·益興·舒川·河陰·道安·鎮安·順天·居昌·羅州·瓮津·杞溪·交河·高靈·蔚山·松京·京山·遼山·振威·臨江·青松·江興·機張·嘉山·清安·江東·盈德·樂安·永興·江陵·加平·泗川·潭陽·德恩·晋州·平壤)

◇金氏(光山·安東·慶州·金海·延安·義城·江陵·順天·彥陽·扶安·禮安·商山·善山·瑞興·原州·清州·海豐·蔚山·永同·羅州·靈光·開城·晋州·安山·豐山·道康·清道·海州·德水·楊州·梁山·錦山·金寧·仁同·密陽·棠岳·水原·公州·盆城·祥原·固城·咸昌·龍宮·全州·豐川·海平·三陟·高靈·交河·靈岩·牙山·熙川·江華·廣州·通川·遂安·綾城·藍浦·積城·大邱·永川·海美·江東·忠州·和順·樹州·貞州·星州·尙州·恩津·龍城·潭陽·臨津·津島·振威·玉果·南陽·菴山·旌善·儒州·江西·永興·高陽·稷山·義興·靈山·牛峯·英陵·東萊·青松·熊川)

◇朴氏(潘南·密陽·咸陽·高靈·竹山·忠州·務安·陰城·尙州·珍原·泰安·全州·慶州·文義·昌原·蔚山·比安·江陵·軍威·春川·固城·靈岩·義興·彥陽·三陟·寶城·殷豐·唐津·泗川·牛峯·沔川·延日·驪州·寧海)

◇鄭氏(東萊·延日·溫陽·清州·河東·晋州·光州·海州·慶州·草溪·羅州·奉化·瑞山·

長鬐・固城・廣州・盈德・海南・保寧・長興・瓮津)

◇趙氏(豐壤・楊州・漢陽・白川・林川・平壤・咸安・淳昌・橫城・稷山・廣州・新昌・忠州・平山・南海・康津・牙山・興陽・洪陽・永興・酒泉)

◇尹氏(坡平・海平・南原・漆原・海南・咸安・玄風・永川・茂松・楊州・驪州・新寧・醴泉・酒泉・德豐・延安)

◇洪氏(南陽・豐山・缶溪・洪州・安山・義州・開城・塩州・懷仁)

◇申氏(平山・高靈・鵝州・寧海・殷豐・谷城)

◇徐氏(大邱・利川・長城・扶餘・連山・南陽・龍宮・軍威)

◇權氏(安東・醴泉・延安)

◇閔氏(驪興)

◇韓氏(清州・平山・谷山・安邊・唐津・漢陽・楊州・保安・新平・交河・扶安)

◇沈氏(青松・豐山・三陟・富有・豐川)

◇柳氏(文化・晉州・全州・高興・瑞山・豐山・善山・白川・靈光・仁同)

◇崔氏(全州・慶州・海州・江陵・水原・朔寧・和順・江華・朗州・陽川・鐵原・忠州・耽津・興海・永川・通川・草溪・楊州・祥原・聞慶・開城・河陽・尙州・金海・珍山・泰仁・青松・保寧・唐津・仁同・竹山)

◇俞氏(杞溪・昌原・川寧・仁同・康津・高靈・務安)

◇宋氏(礪山・恩津・鎮川・洪州・新平・南陽・冶爐・延安・清州・泰仁・羅州・德山・聞慶・楊州)

◇安氏(順興・竹山・廣州・康津・忠州・太原・公山)

◇吳氏(海州・同福・寶城・樂安・咸陽・羅州・高敞・平海・軍威・荳原・義城・延日・朗山・長興・杞溪・和順)

◇成氏(昌寧)

◇姜氏(晉州・禪川)

◇南氏(宜寧・英陽・固城)

◇任氏(豐川・長興・谷城)

◇許氏(陽川・河陽・金海・泰仁)

◇黃氏(長水・昌原・檜原・平海・尙州・懷德・黃州・齊安・紆州・善山・杭州)

◇張氏(仁同・德水・興德・丹陽・木川・鳳城・沃城・蔚珍・鎮川・昌寧・結城・順天・知禮・松禾・晉州・太原・扶安・壽城・安東)

◇奇氏(幸州)

◇元氏(原州)

◇慎氏(居昌)

◇魚氏(咸從)

◇嚴氏(寧越)

◇高氏(濟州・長興・開城・延安・橫城・安東・江華)

◇梁氏(南原・濟州・忠州・羅州・清州)

◇河氏(晉州)

◇曹氏(昌寧・嘉興・壽城・清道)

◇蔡氏(平康・仁川)

◇丁氏(羅州・靈光・昌原)

◇林氏(羅州・平澤・長興・善山・兆陽・扶安・恩津・全州・安義・蔚珍・沃野・開寧・益山・醴泉・新平・東萊・安陰・安山・鎮川)

◇具氏(綾城)

- ◇白氏(水原·善山·扶餘·大興·稷山·洪州)
◇睦氏(泗川)
◇盧氏(光山·豐川·谷山·交河·安東·海州·
長淵·萬頃·靈光·慶州·西河·善山)
◇辛氏(靈山·寧越)
◇文氏(南平)
◇羅氏(羅州·錦城·安定·壽城)
◇孫氏(密陽·慶州·平海·一直·求禮·岳陽·
清州·比安)
◇孔氏(曲阜)
◇邊氏(原州·黃州·長淵)
◇郭氏(玄風·清州·海美·善山)
◇呂氏(咸陽)
◇孟氏(新昌)
◇禹氏(丹陽·慶州)
◇裴氏(達城·星州·盆城·興海)
◇薛氏(淳昌)
◇蘇氏(晉州)
◇康氏(信川·谷山·載寧·忠州·晉州·祥原·
鎮川)
◇慶氏(清州)
◇琴氏(奉化)
◇表氏(新昌)
◇朱氏(新安)
◇鮮于氏(太原)
◇皇甫氏(永川)
◇南宮氏(咸悅)
◇玄氏(星州·定州·昌原·順天)
◇楊氏(清州·南原·中和)
◇全氏(天安·旌善·龍宮·全州·沃川·羅州·
慶山·平康·機張·通津·兆陽·安東·慶州·
河陽·江陵)
◇劉氏(江陵·居昌·金城·全州·慶州·忠州·
靈城)
◇咸氏(江陵)
◇承氏(延安·光山)
◇楔氏(慶州)
◇魏氏(長興)
◇鞠氏(潭陽)
◇車氏(延安)
◇陳氏(驪陽·羅州·江陵·梁山)
◇邕氏(玉川)
◇房氏(南陽)
◇方氏(溫陽·軍威·務安)
◇宣氏(寶城)
◇魯氏(江華·咸平)
◇池氏(忠州)
◇玉氏(宜寧)
◇周氏(尙州)
◇都氏(八莒·星州)
◇田氏(潭陽·南陽·牛峯·幸州·禮山·梁山)
◇千氏(穎陽)
◇廉氏(坡州)
◇卞氏(草溪·密陽)
◇晉氏(南原)
◇邢氏(晉陽)
◇吉氏(海平)
◇明氏(西蜀)
◇夫氏(濟州)
◇太氏(永順·陝溪)
◇牟氏(咸平)
◇卓氏(光山)

- ◇ 馬氏(長興)
 - ◇ 奉氏(江華)
 - ◇ 余氏(宜寧)
 - ◇ 印氏(喬洞)
 - ◇ 蔣氏(牙山)
 - ◇ 潘氏(光州·巨濟)
 - ◇ 殷氏(幸州)
 - ◇ 錢氏(聞慶)
 - ◇ 葉氏(慶州)
 - ◇ 陸氏(沃川)
 - ◇ 諸氏(漆原·高城)
 - ◇ 秋氏(秋溪)
 - ◇ 程氏(韓山·河南)
 - ◇ 范氏(錦城)
 - ◇ 陰氏(竹山)
 - ◇ 施氏(浙江)
 - ◇ 柴氏(綾鄉)
 - ◇ 片氏(浙江)
 - ◇ 杜氏(杜陵)
 - ◇ 秦氏(豐基)
 - ◇ 卜氏(沔川)
 - ◇ 丘氏(平海)
 - ◇ 石氏(忠州·廣州)
 - ◇ 庾氏(茂松)
 - ◇ 桂氏(遂安)
 - ◇ 延氏(谷山·開寧)
 - ◇ 仇氏(昌原)
 - ◇ 唐氏(密陽)
 - ◇ 莊氏(全州)
 - ◇ 芮氏(義興·岳溪)
- 餘外諸姓不盡錄

3. 價 值 性

이상에서와 같이 本書의 特徵과 內容을 나름대로 紹介해 보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全 姓·全 貫을 파악함에 있어 아쉽게도 未考의 姓·貫이 있었음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그러나 本書에서 돋보이는 것은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本書는 우리나라 全 姓氏의 科宦譜일 뿐만 아니라 系譜學叢書로도 利用할 수 있으므로 이를 涉獵하면 우리나라 어느 姓氏를 莫論하고 그 家門의 所自出과 門閥의 顯達 및 沈滯, 그리고 相互關係 등을 손쉽게 看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全 姓氏가 本貫과 함께 한데 集成되어 있어 自己家門은 물론 他家門에 대한 姓氏나 本貫의 터득이 매우 容易할 뿐만 아니라 이를 契機로 하여 갈수록 疎忽해져 가는 系譜學에 眼目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여기에는 우리나라 全 姓·貫別 歷代著名 人物들의 行蹟이 망라되었음은 물론, 특히 科宦譜나 系譜 이외에도 上古時代 檀君에서 近世朝鮮에 이르는 歷代王國의 國系와 朝鮮時代에 制定 施行했던 官制가 함께 첨부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학문중, 특히 歷史學이나 國文學을 연구하는 이에게 더없는 基礎의 資料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本書는 나름대로 價値性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다. 〇